

심의번호 : 준법심의필 2014-336 [심의일 : 2014.10. 16]

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마이 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이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▶ 상품명 :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

▶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 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입니다.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 계약</u> <u>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</u>

(2014.10.16 현재, 세전 기준)

(<u>2014.10.16 현재, 제신 기문)</u>					
구 분	내 용				
가입자격	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				
가입금액	1원 이상				
가입기간	6 개월, 1년, 2년, 3년				
기준금리 (세전)		가입기간		DB(확정급여형) DC(확정기여형) IRP(개인퇴직계좌)	
		6개월이상 1년미만		연2.35%	
		1년이상 2년미만		연2.43%	
		2년이상 3년미만		연2.56%	
		3년제		연2.66%	
	※ 기준금리는 2014.10.16 현재 기준이므로, 상품 가입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에 고시된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	
중도해지 금리	가입일(재예치일) 당시 기준금리 x 경과월수/계약월수(12개월) x 50%				
만기 후 금리	1년 이내		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율의 1/2		
	1년 초과		연%1.0		
이자 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				
부가혜택	1. 중도해지 가.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자를				

지급합니다.

- 나. 위 '가'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(1) 내지 (3)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예금주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약정한 이율을 지급일 전날까지 적용한다. 단,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 '가'를 적용합니다.
 - (1)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 발생하는 경우
 - (2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(가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(나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(다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
 - (라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
 - (마) 천재.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 - (3)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(가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
 - (나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(다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(라) 수탁자의 사임
 - (4) 퇴직연금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하는 경우
 - (5) 퇴직연금제도의 동일 사업자내의 제도 전환인 경우
 - (6)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인출 사유 발생시
 - (7)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연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

2. 분할해지

- 가.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- 나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.
- 다. 만기일전에 분할해지를 하는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.

3. 재예치

- 가. 이 예금의 가입시 또는 만기일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 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가 가능합니다.
- 나.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계약의 해지

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예금자보호여부

해당

이 예금 중 DC형/IRP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

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이 예금 중 DB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

3 유의 사항

- ▶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
- ▶ 기타 유의사항
 - 1. 질권설정, 양도양수, 담보제공(예금담보대출 불가) 등은 불가합니다.
 - 2.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 - 3.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**콜센터(1588-6200, 1544-6200), 금융민원센터(051-644-8738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